

「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0. 28 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11.04 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11.04 (화)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이경식)

가. 「지방재정법」이 2008. 2. 29 개정됨에 따라 「평창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」의 관련 조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4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”로 함.
- 2) 제2조 제1호 중 “지방재정법 제14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로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진영)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【붙임】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4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지방재정법 제14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